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이용계약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8조 (이용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본인부담금을 6개월 이상 미납 시에는 기관에서 수급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30일 전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관은 기타 사회복지서비스에 연계를 실시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자관리)

1. 정기적으로 내방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관리를 실시한다.
2. 사망, 타 기관 이용 등의 경우 관리에서 제외한다.

제10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 :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월 이용한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306,400원	2,083,400원	1,485,700원	1,370,600원	1,177,000원
월 이용료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 기초생활 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 *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급여를 이용하는 만큼만 적용하며, 원거리교통비, 치매수당, 사회복지사 가산, 프로그램 관리자 가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 장기요양인정 월 또는 시설급여에서 재가급여로 변경 등의 사유로 월 중에 재가급여를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말일까지를 1개월분의 월 한도액으로 적용한다.
- *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 * 수급자가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받다가 재가급여를 이용한 경우 등에는 월 한도액에서 기지급된 특별현금급여액을 제외한 금액 범위 내에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2. 급여종류별 이용료 (방문요양)

2025년 장기요양 수가

구 분	수 가(1회당)
30분	16,940원
60분	24,580원
90분	33,120원
120분	42,160원
150분	49,160원
180분	55,350원
210분	61,670원
240분	68,030원

- * 장기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 * 서비스 제공 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 *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
- * 수급자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1~2등급의 경우에는 월 8회에 한하여 270분이상 480분이하, 3~4등급의 경우에는 월 4회에 한하여 210분이상 480분이하의 범위내에서 연속하여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제공기록지 또는 태그 특이사항에 수급자 등의 동의내용과 요청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3. 급여종류별 이용료 (방문목욕)

구 분	수 가(1회당)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48,690원

- * 서비스 제공시간은 1시간(60분)으로 제한되며, 장기요양등급 등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수가가 동일하게 산정됨
- *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함
- * 방문목욕차량 미 이용 시 수가는 이동욕조, 목욕의자, 세면용품 등 목욕용 장비, 용품 등을 휴대하고 가정을 방문,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때 적용됨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

- * 대상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외부 이용 교통비 등의 비용은 전액 대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재가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대상자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신원인수인의 의무와 권리는 아래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 ① 수급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2조 (대상자 및 서비스제공자의 권리 및 의무)

- 대상자의 의무

- * 월 이용료의 납부를 지체없이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 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내용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 및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 대상자의 권리

- * 개인정보 및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사회적 관계유지를 위해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 *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의 의무가 있다.
- *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 및 기관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의 사망 또는 타기관으로 이전했을 경우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한 때
4. 6개월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5. 대상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제 4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계약기간 중 수급자의 상태변화나 장기요양인정 등급의 변동에 따른 급여제공 내용변경에 의해 급여비용은 변경된다.
2. 변경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수가변경시** : “장기요양 급여제공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2) **등급변경/갱신시** :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재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3) **자격기준변경시** : 자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 변경에 의해 추가 또는 경감되는 부담금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유선으로 통보한다.
 - 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수급자 욕구사정 후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상의 급여비용과 횟수와 급여제공계획서의 급여 비용과 횟수가 상이할 경우 “급여제공계획서 내용에 표시” 또는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서비스의 변경을 한다.

제 5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5조(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 대상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내용	세 부 내 용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 도움, 몸 청결 등 - 몸 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등 - 체위 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가사지원(취사, 청소, 세탁, 주변 정리정돈, 장보기 등) - 개인활동 지원(산책, 외출, 병원 동행 등) -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하기
정서 지원	- 말벗 및 격려(안부전화 및 방문,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 여가활동 돕기(TV시청, 음악듣기 등) - 의사소통 도움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 (미로 찾기, 학습지 풀이, 종이접기 등) - 일상생활 함께하기 (병원동행, 은행업무 동행 등)
인지관리 지원	-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 수급자 안전관리 도움 -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관찰 및 기록	- 약물복용, 배설상태 등 관찰하고 기록

- 방문목욕 : 목욕용품을 갖추서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전신입욕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서비스 내용	세 부 내 용
방문 목욕 지원 (차량 미이용)	- 목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 목욕 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 씻기, 머리말리기 포함) -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 등 - 목욕 후 주변정리

- 그 외 서비스 지원

서비스 내용	세 부 내 용
기 타	- 대상자의 사용 물품 구입 및 정리 - 대상자의 자립심을 위해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기 -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제16조 (이용료 및 비용 부담)

- 월 이용료(본인부담금)는 해당 월의 익월 말일까지 지정계좌(국민은행 350601-04-359077)로 입금한다.

제1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이런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본인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부담이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